

##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작물(LMO)의 재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유전자변형원물작물 : 유채, 목화, 콩, 옥수수]

- 국립종자원에서는 매년 LMO 종자의 환경방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17년도 국내에서 유전자 변형된 유채, 목화가 발견되어 폐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향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및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종자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안전한 종자의 재식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서는 유채, 목화 자기재종 농가를 대상으로 파종 전 무상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구입처에 확인 또는 자체적으로 감사·관리하여야 합니다.
- 유채, 목화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 및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유동·재배 시의 피해를 경감하여 반드시 유전자변형작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자연구지원팀 T. 054-912-0165-7

종자연구지원팀 T. 054-912-0165-7

김원자원 T. 038-433-2515

종자연구지원팀 T. 054-912-0165-7

종자연구 T. 043-653-2062

종자연구 T. 043-653-2062

종자연구 T. 041-640-4132

종자연구 T. 041-640-4132

전북지원(충청지사) T. 063-530-3600

전북지원(충청지사) T. 063-530-3600

전북지원(충청지사) T. 063-530-3600

전북지원(충청지사) T. 063-530-3600

전남지원 T. 061-322-3971

전남지원 T. 061-322-3971

전남지원 T. 054-898-3238

전남지원 T. 054-898-3238

전남지원 T. 055-359-2578

전남지원 T. 055-359-2578

제주지원 T. 064-901-2995

제주지원 T. 064-901-2995

제주지원 T. 038-336-6242

제주지원 T. 038-336-6242

서부지원 T. 063-901-2595

서부지원 T. 063-901-2595

www.seed.go.kr

## 종자유통관리제도 및 종자유 LMO 안전관리



국립종자원

339680 경북 김천시 혁신로 119  
 ☎ 054-912-0113~7, 054-912-0187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를 말합니다. 변식·생식이 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의 GMO (Genetic Modified Organis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작물(LMO)이 발견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식물체를 폐기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자법?

종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알, 줄기, 뿌리 등

## 1. 종자업 등록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면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두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 1.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시설	정기간접식 시설에 대하여 소규모인 경우, 여성의 동성근로의 시설을 확보할 것. 다른 종자는 기온·조도·습도 등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시설할 수 있다.
장비	재질·조도·온도에 대한 소규모인 종자업 등의 시설을 보완할 것. 다만, 묘목·영양체류 종자업은 제외한다.
장비	정기간접식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 2. 개발기준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장비	정기간접식 포장기, 수분분석기 및 공기청정기 1대 이상인 것
시설	1. 교토도용(藥) 시설은 7,000㎡ 이상인 것 2. 기타 다른 종자는 나무 통수통 5구 이상(1차기 소수양액 나무 통수통 3구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것. 다만, 묘목·영양체류 종자업은 제외한다.
과수	정식기, 과포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 3. 품질표시

장비	정식기, 과포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시설	1.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2.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장비	정기간접식 포장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장비	정기간접식 포장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4. 품질표시를 위한 포장·표지 등(제14조 관련)



# 묘근?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시로 전복(接木)시킨 어린식물체

## 1. 묘근업 등록

재소·양채·식량작물의 묘근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묘근업 등록을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 1. 묘근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장기준	정기간접식 시설에 대하여 소규모인 양치업 등 시설을 확보할 것. 다만, 부가치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설계·구조·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설계·구조·면적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발기준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3.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4.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5.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과포기(인산)채취기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장비	정식기, 과포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장비	정식기, 과포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 2. 교육기관

교육기관	정식기, 과포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장비	정식기, 과포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시설	1. 열처리 시설은 30㎡ 이상인 것 2. 건조 시설은 10㎡ 이상인 것
장비	정식기, 과포기, 과포기(인산)채취기 1대 이상인 것

4. 품질표시를 위한 포장·표지 등(제14조 관련)



# 종자산업법상

주요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종자·육묘업자에 대한 주요 과태료 처벌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무용 종자 및 묘근물질을 씨앗을 뿌려 아낀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묘근 및 묘목을 판매하거나 묘근·묘목의 중량·품질(중지산정법 제 44조)에 미달한 경우(중지산정법 제 43조 위반)	법 제66조 제 4항 제 3호	100	300	500	700	1,000
발아번호·출시행이치나 종자·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및 묘목을 진열, 보관한 경우(중지산정법 제 44조)	법 제66조 제 2항	10	30	50	70	100
종인 조사, 검사 또는 수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만할 경우(중지산정법 제 45조)	법 제66조 제 5항	100	300	500	700	1,000

### 종자·육묘업자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법 제38조 위반)	영양정지 90일	영양정지 180일	등물 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목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법 제32조 위반)	영양정지 3일	영양정지 30일	영양정지 60일

건설한 종자(묘) 유통으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